

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농업관련 법률 핵심 내용 정리

1.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

농업인의 소득안정, 농업 ·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,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적극적 육성,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,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,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

○ 법률 주요내용

- ①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 · 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
- ②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장치 및 등록제를 ‘(가칭)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의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마련
- ③ 농업 · 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 기능의 증진시책 방향과 적절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농업 · 농촌의 특성에 맞는 농촌경제의 활성화 시책과 지역간의 소득 균형시책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 · 시행하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·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복지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
- ⑤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 ·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함

⑥ 여성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 앞으로 ‘여성농어업인육성법’을 개정,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2. 식품산업진흥법

농업과 불과분의 관계인 식품산업의 발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

○ 법률안 주요 내용

①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이 농림부(장관)가 주관하게 되었으며 기본계획에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포함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

② 식품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, 기술개발의 촉진, 식품통계 조사, 해외교류 협력과 시장 개척 확대, 식품산업 질적 활성화 및 사업자 단체 등의 다양한 시책을 규정

③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식품 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‘명인’으로 지정, 육성하고,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농산물 생산자와 식품업계 간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추진 규정

④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식생활 문화를 장려하고, 고유의 음식 등 식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도록 규정하였으며 우리땅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전통음식을 이용한 식단의 개발 · 보급 등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함. 또한 우리 고유의 식문화와 음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 추진 근거 마련

⑤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등 식품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고, 유기식품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

3.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

농어촌의 경제적 · 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도시민의 휴양 및 전통문화 체험 등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의 지속가능한 교류체계 마련

○ 법률 주요내용

① 농어촌체험 · 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마을 단위 체험 ·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 도입, 체험 · 휴양마을의 보험가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부여

② 도농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농어촌현장체험에 대한 지원, 농어촌 체험 · 휴양마을 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제, 초 · 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권장 및 도농교류 활동을 확인하는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등을 포함. 또한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농어촌정주지원 근거 마련

③ 민간 차원의 도농 교류지원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, 농어촌 관광 등 민단 도농 교류지원을 위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‘도농교류지원기구’ 설치 근거 마련

④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일력 양성을 위해 도농교류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, 농어촌체험지도와 마을해설 등을 위한 농어촌체험지도사, 농어촌마을 해설가 제도 도입

4.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

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전국적 실시로 인해 광우병 등 위생 · 안전상의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 제고와 둔갑판매 방지,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

○ 법률 주요내용

①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 · 폐사하거나, 해당 소를 수입 · 수출, 양도 · 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

② 농림부장관은 출생 ·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,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, 통보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함

- ③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·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,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·양수할 수 없도록 함
- ④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토록 함
- ⑤ 도축업자, 식육포장처리업자,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함
- ⑥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

5.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선거 출마 가능 농협법 일부 개정

국회의원 및 여타 선거법에서는 형 집행이 만료와 동시에 선거에 출마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독 농축협조합장 선거법에는 형 만료 후 1년 경과의 불합리한 조항이 있었음

○ 법안 주요 내용

- ①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(조합장 및 이감사) 선거 출마가 형 집행 만료 이후 1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하였으나 형 집행이 끝남과 동시에 가능하게 개정

6.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등의 식품위생법 개정

실효성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 대상 매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식품을 확대 시킴

○ 법률 주요내용

- 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대상 매장의 규모를 300m²(약 90평) 이상에서 100m²(약 30평) 이상으로 확대
- ②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식품은 쌀, 김치류 중 배추김치, 육류 중 쇠고기·돼지고기·닭고기로 규정하고,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